

## 육지소규모항의 현황 및 개발방향

# 개발 효율성 제고시켜야 한다

적극적인 개발의지가 필요

신 순균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토목사무관

- 그동안 지정어항 위주의 개발이 집중되었으나  
 완공률이 30% 정도로 어항을 이용하는 어업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정어항과 멀리 떨어진  
 소규모항의 어촌마을 어업인은 평상시의  
 어업활동과 기상악화시의 안전대피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 따라서 육지소규모항이 위치하고 있는 어촌·어항의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어촌마을의 기초어항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육지소규모항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으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해당 어업인의 적극적인 개발의지와  
 정책의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육지소규모항 개발사업은 '89년 수산청에서  
내무부로 이관되어 어항개발 4개년(89~92)  
및 1차5개년(93~97) 계획을 완료하고 2차5  
개년(98~2000) 계획을 수립하여 방파제, 물  
양장 등 어항기본 시설을 확충, 어업인의 생  
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연  
안의 육지소규모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액 분산투자 됨  
으로써 개발효과가 떨어지고, 비전문 부처의  
어항개발 전문성 결여 및 소극적인 개발정책  
으로 어항개발이 극히 부진한 실정으로서 어  
업인의 개발욕구가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  
다. ('99까지 3,478억원투자, 어항공사 1건당  
1억원 미만)

## 기획특집 ① 육지소규모항 개발에 바란다

99년 5월 제2차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이 업무가 우리부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어촌마을의 일상생활 터전이 되는 기초어항으로 조기에 육성하여 영세어업인의 정착의 육을 고취시키고 지정어항과 연계 개발함으로써 어촌지역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으로 2000년도 어항법 개정시 육지 소규모항 개발에 필요한 제도 개선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어촌마을의 어업기반시설인 육지소규모항의 개발수요를 예측하여 어촌 종합개발사업, 각종 지역개발

사업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육지소규모항의 현황

육지소규모항이란 육지연안의 어촌마을에 위치한 자연 또는 인공의 어업근거지로서 어항법상의 지정어항이 아닌 항·포구로서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어업근거지, 어촌지역 주민의 생활편의시설, 소형어선 안전정박을 위한 기반시설의 역할을 한다.

소규모항은 어항법상 어항으

로 지정된 제1·2·3종 어항을 제외한 미지정어항으로서 전국의 연안·도서지역에 약 1,800개소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소규모항은 어촌마을 수산업의 중요한 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종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소규모항은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어업근거지일 뿐만 아니라 어촌지역 주민의 생활편의시설, 주요 교통기반시설, 소형어선의 안전 정박을 위한 기반시설, 어촌관광의 활동근거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해양레저 관광의 중요한 기착지로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우리부에서는 각 시·도를 통해 전국의 육지소규모항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의 육지연안에 963개소의 항·포구가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지소규모항에 거주하는 인구수는 약 32만명 정도이며 항·포구를 이용하는 어선은 전국 어선 91,000척의 32%에 이르는 약 3

### 소규모항 현황

(단위:개항)

구 분	합 계	부 산	인 천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합 계	1,821	37	40	18	24	30	34	31	942	100	482	83
육 지	963	29	10	18	20	30	22	14	303	92	354	71
도 서	858	8	30	-	4	-	12	17	639	8	128	12

### 시·도별 인구 및 어선 수

구 分	항 수	인구 및 가구		어 선 수		
		인 구 수	가 구 수	계	동 력	무동력
합 계	963	321,857	112,838	29,249	25,784	3,465
부 산	29	10,057	3,235	1,836	1,698	138
인 천	10	1,024	355	245	210	35
울 산	18	2,944	2,646	597	514	83
경 기	20	4,728	1,727	654	624	30
강 원	30	8,687	2,542	795	723	72
충 남	22	8,474	2,542	1,352	1,347	5
전 북	14	4,051	1,277	477	461	16
전 남	303	53,795	24,608	8,378	8,138	240
경 북	92	18,537	7,534	2,155	1,834	321
경 남	354	78,403	25,594	11,779	9,263	2,516
제 주	71	131,157	40,778	981	972	9

만척으로 조사되었다.

어업인구는 제주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선은 경남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개발현황

현재까지의 소규모항 개발 사업은 육지소규모항, 도서소 규모항, 어촌종합개발 등 크게 3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1969년 어항법이 제정됨에 따라 1971년 최초로 어항개발을 위한 제1·2·3종어항을 지정하였으며 이에따라 1972년 제2종어항 및 소규모항에 국고 260백만원을 투자한 것이 소규모항에 대한 최초의 투자이며 그후 1987년까지 소 규모항 시설에 국가예산 86억 원이 투자되었다. 1980년대

도서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낙후지역 개발차원에서 사업주관 부서가 수산청에서 내무부로 이관되었으며 그후 육지소규모항과 도서소 규모항으로 분리되어 사업이 추진되었다.

우리부에서는 1994년부터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항을 중심으로 한 어업 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999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육지소규모항 개발업무가 우리부로 이관되어 본격적인 육지소규모항의 개발이 추진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간 각종 사업으로 추진되는 소규모항 개발사업비는 약 300억원 정도로서 이는 지정 어항 개발사업비의 약 20% 정도에 불과하며 이중 어항개발사업이 아닌 어촌종합개발

사업비를 제외하면 약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육지소규모항의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말 현재 완공 항 수가 전체의 22%이며 총 개발계획의 35%가 투자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5%의 완공률을 보이고 있으며 제주도가 가장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비는 지역별 어항 수가 달라 편차가 심하나 경남 경북 제주 강원 전남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육지소규모항 전체에 대한 그동안의 투자액은 총 3,478 억원으로 해당 평균 3.6억원 규모이며 소규모항 1개소 완공에 필요한 평균사업비가 약 10억원으로서 기존의 투자를 고려할 경우 육지소규모항의 기본시설이 완공되기까지 부가적인 자연재해가 없다는 가

정 아래 최소한 3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같이 소규모항에 대한 투자는 그 중요성과 기능을 고려할 때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소규모항의 기본시설 완공은 현 여건상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인근 지

### 소규모항 개발연혁

(구)수 산 청



행 정 자 치 부



해 양 수 산 부

- '72. : 제2종어항 및 소규모항에 최초투자(260백만원)

- '72~'88 : 소규모항 사업으로 86억원 투자

- '89. 1 : (구)수산청 ⇒(구)내무부로 사무 이관

※ 도서지역과 육지지역 소규모항으로 분리 투자

- '89~'92 : 육지소규모항 4개년 개발계획 시행

- '93~'97 : 육지소규모항 제1차 5개년 개발계획 시행

- '98~2002 : 육지소규모항 제2차 5개년 개발계획 추진중

- '99. 5 : 제2차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사무 인수

※ '94년부터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소규모항 개발

## 기획특집 ① 육지소규모항 개발에 바란다

육지소규모항 투자현황

(단위: km, 억원)

구 분	항 수	완공항수	총 계 획		'99까지 기시설		잔 량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963	214	337.5	9,937	224.2	3,478	113.3	6,459
부 산	29	20	5.1	164	4.7	120	0.4	44
인 천	10	3	1.9	27	1.3	16	0.6	11
울 산	18	8	10.1	422	4.4	88	5.7	334
경 기	20	15	6.0	139	3.9	42	2.1	97
강 원	30	2	15.5	1,758	6.6	579	8.9	1,179
충 남	22	6	9.0	116	4.7	28	4.3	88
전 북	14	8	3.4	34	2.7	23	0.7	11
전 남	303	43	103.2	2,178	58.0	570	45.2	1,608
경 북	92	8	33.2	1,988	23.5	612	9.7	1,376
경 남	354	100	119.4	1,695	92.3	790	27.1	905
제 주	71	1	30.7	1,416	22.1	610	8.6	806

※ 2000년도 투자 예산 : 57.2억원

정어항과의 연계성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별투자, 낙후 어촌 지원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개발실태 분석

△ 소규모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미비 : 육지소규

모항 개발사업은 그동안 2개 부처에 업무가 분산되어 지정 어항 및 어촌종합개발과 연계 한 체계적인 개발이 곤란하고 소규모항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법령이 미비되어 있다.

△ 소액 분산투자에 따른 사업효과 저조 및 재해대책 미흡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사업 추진 체계

**중 앙 부 처** ⇒ 사업계획 총괄 및 국비 지원



**시 · 도** ⇒ 사업추진 지도 및 사업비 지원



**시 · 군 · 구**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이 취약하여 지방비 투자확대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서 투자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어항기능의 수행이 저조하며 소규모항의 특성상 시설규모가 빈약하여 태·폭풍 등 기상악화시 시설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 소규모항에 육상 시설 설치 곤난으로 기능 저하 : 공유수면 매립 협의 절차 미이행에 따른 조성부지의 등기가 어렵고 배후부지의 육상기능시설 설치가 곤란하여 어항기능의 활성화에 애로가 있다.

△ 어항개발에 대한 인식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소극적 개발 및 적정 어항시설 판단 불가 : 어항개발이 타사업에 비하여 가시적 효과가 적어 집중투자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대다수 육지소규모항에 대한 어항시설의 적정 소요판단 및 구조물 안정성 확보 등이 결여되어 있어 앞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발의지와 더불어 기술적인 업무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사무이관에 따른 효과

개발주체 일원화에 따른 효과  
어항·항만 개발의 전문성 활용과 기술향상 도모, 해양·수산 개발의 종합적인 정책수단 확보, 동일 행정대상 일원화에 따른 사업 효율성 증진 등의 개발기능과 지정어항과 연계 개발함으로써 이용 효율성 극대화, 어업기반시설의 조기확충으로 소득증대 및 어촌정주기반 조성, 육상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활성화로 어항기능 제고 등 이용기능을 높일 수 있다.

## 육지소규모항의 개발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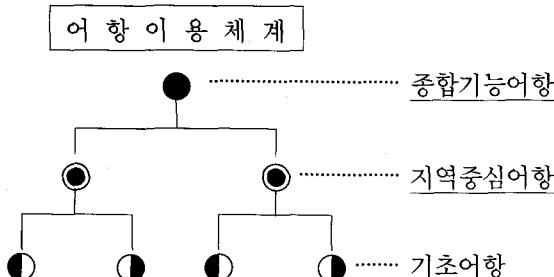
어업기반시설인 육지소규모

항의 확충과 어촌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소득증대와 정주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업인의 정착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표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투자효과 제고를 위한 완공위주의 집중투자 그리고 어촌생활 및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개발촉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육지소규모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는 어항법 등 관련법의 법적근거 마련과 개발잠재력이 높은 항·포구의 조기완공을 위한 어항지정 및 예산지원 등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며, 어항개발 잠재력과 지역적 특성 및 낙후된 어촌개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항개발계획을

육지소규모항이 위치하고 있는 어촌·어항의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어촌마을의 기초어항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육지소규모항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으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해당 어업인의 적극적인 개발의지와 정책의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어항이용체계의 조기 확립



- 종합기능어항 : 제1·3종어항 및 연안항 중 수산지원기능, 관광, 교통 등 종합기능 수행
- 지역중심어항 : 제1·3종어항 및 제2종어항 중 수산지원기능과 대피기능 수행
- 기초어항 : 지역중심어항을 제외한 제2종어항 및 소규모항으로 수산기초기반 및 주민생활 편의기능 수행

## 기획특집 ① 육지소규모항 개발에 바란다

수립하고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잠재력이 높은 항·포구를 우선 개발하는 등 육지소규모항 개발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소규모항은 어업활동에 필수적인 기초어항시설과 기초생활여건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어업의 전체기능과 어업행태 및 인접항과의 연계성 등에 따른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소규모항의 규모와 기능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항에 대한 체계적인 유형 분류와 기능성을 고려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어항은 현재까지 수산업을 위한 단순기능 위주의 기본시설에 주로 투자하였으나 앞으로는 선진국의 어항처럼 배후시설에 대한 이용도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또한 소규모항의 배후부지가 미약하여 관련기능을 유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계획수립 시 배후의 계획이 고려된 충분한 공간확보가 요망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최근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근해어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연안목장화사업 등의 추진이 전망되어지며 장기적으로는 다수의 어촌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소규모항의 중요성이 더욱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따라서 이러한 어업근거지가 되는 소규모항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소규모항 개발이 어촌종합개발사업, 육지 및 도서 소규모항 개발사업 등에 의해 지원되고 있으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있어 추후 이에 대한 대책과 예산확충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어항이 갖는 특성에 따라 개발의 상호 연계성을 높이고 개발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전국의 육지소규모항에 대한 전면적인 이용실태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개발수요를 예측하고 개발정책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촌지역은 수산업기반시설이 미흡하여 생산여건이 열악하고 도농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소득저하와 낙후된 생활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최근 이웃 나라와의 어업협정에 따른 수산업의 구조조정, 수산자원의 고갈 심화, 해양환경의 지속적

오염 등으로 인하여 수산업의 장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수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인 어항시설의 조기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 한 시점이라고 하겠으며 그 동안 수산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기반시설이 되는 어항은 어선의 안전정박과 어업인의 생명·재산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시설로서 개발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어항법으로 지정된 지정어항 위주로 개발이 집중되어 왔으며 그나마 지정어항의 완공률도 30% 정도로서 어항을 이용하는 어업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정어항과 멀리 떨어진 소규모항의 어촌마을 어업인은 평상시의 어업활동과 기상악화시의 안전대피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육지소규모항이 위치하고 있는 어촌·어항의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어촌마을의 기초어항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육지소규모항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으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해당 어업인의 적극적인 개발의지와 정책의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